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, 이소라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1381호

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ESG는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의 약어로,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재무적 또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모은 것을 뜻합니다.

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,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,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사업추진 시 필요한 용자 시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 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